

제255회 정례회
2006.12.14(목)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연기봉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6년 12월 6일

나. 회부일자 : 2006년 12월 6일

3. 제안이유

가.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12.31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을 2009.12.31로 변경하고

나.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추징규정 신설,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 등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

나.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추징규정 추가
(안 제11조)

-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
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 추가

다.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신설, 안 제11조의 2)

-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 제12조)

-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신설에 따라 동일한 감면규정을 정비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 제16조)

- 관련 법규정의 개정 및 사업시행일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감면규정 확대

5. 검토의견

가. 이번 조례개정은 현행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변경하고, 대중교통 지원 및 서민주택건설 지원,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0조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지금까지는 「조세제한특례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 조세제한특례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16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9 (생략)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

※ 조세제한특례법 第120條 (取得稅의 免除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15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13. (생략)

14.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안 제11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감면된 세액을 추정하는 내용은 조세 정의 및 도세 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담보수단으로 이해가 됨.

안 제11조의2 사업용화물자동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소량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감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2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가됨.

안 제16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의 개정은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법률명칭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됨.

라.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2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적용기한은 부칙에서 정하기 위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음.

마. 도세감면 조례 적용기한 연장

도세감면은 감면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면기한은 부칙에서 매 3년을 단위로 정하고 있음.

도세감면 내용중에는 감면기한이 종료됨으로서 폐지하여야 하는 조항과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조항, 감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계속 존치되는 조항 등이 있으므로 조례자체의 감면기한인 3년이 종료되면 감면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 존치 및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게 됨.

따라서 현행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를 다시 3년 연장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

붙임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